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3일(수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4년 9월 10일(수)

4. 개정근거

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2280호, 2014. 1. 21 시행) 제22조

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과 이용인원 증가 증에 따라 일반인과 할인대상자 및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인상 및 할인 대상 제한 등을 통하여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0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은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,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 내 폐업 중인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아 개·보수 후 설치·운영하는 목욕탕으로, 2009.10.1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이 없었으나 이용인원의 과밀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수년간 물가상승 및 운영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료 조정 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이용료를 동결하여 왔고, 목욕탕 시설규모 대비 적정인원 초과 이용(동절기), 경영수지 악화 등에 따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
0 마포복지목욕탕 연도별 이용인원(일평균 이용자)을 보면, 2009년 6,619명(108명), 2010년 38,201명(129명), 2011년 52,925명(187명), 2012년 63,292명(221명), 2013년 74,482명(260명)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2013.10기준, 마포복지목욕탕 1일 평균 이용자 수 253명(100%) 중 할인·

감면대상(마포거주자) 188명(74.3%), 일반인(마포거주자) 9명(3.6%), 타구거주 이용자 수 56명(22.1%)으로 나타나고 있음.

2013년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, 총수입 1억5,671만2천원에 2억2,227만8천원을 지출하여 6,556만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, 2014년의 경우에는 총수입 1억8,981만6천원에 2억3,413만5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4,431만9천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0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,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또는 재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안 제16조에 “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”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
0 본 조례안 제16조제3항 “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”에서 “구”는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4.1.21] [법률 제12280호, 2014.1.21, 일부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